**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정의**

제1조

규약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여기에 준하는 사업자”란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제조판매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제조판매업자에게 위탁한 화장품에 대해 자기 상표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2. 화장품에 대해서, 제조판매업자와 총대리점 계약 등 특별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자

**종류별 명칭**

제2조

규약 제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류별 명칭“이란 일반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명칭으로, 별표1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단, 판매명에 종류별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명을 종류별 명칭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전항의 표시는 괄호, 윤곽, 색상 변경 등에 의해 눈에 띄게 표시한다.

**판매명**

제3조

규약 제4조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명”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약품 의료기기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승인을 받은 명칭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한다.

**주소**

제4조

규약 제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주소”는 총괄제조판매책임자가 그 업무를 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내용량**

제5조

규약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내용량 표시(용기 또는 포장재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는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따른다.

1. 내용량은 내용중량, 내용체적 또는 내용수량으로 표시하며, 내용중량은 “g“ 또는 “그램”, 내용체적은 “mL“ 또는 “밀리리터”, 내용수량은 개수 등의 단위로 표시한다.
2. 내용중량 또는 내용체적은 평균량으로 표시한다. 단, 최소량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소량에 의할 수 있다.
3. 내용량을 평균량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량과 실질 내용량이 부족한 경우의 공차는 마이너스 3% 이내로 한다.
4. 내용량이 10 그램 또는 10 밀리리터 이하인 화장품(이하, “소용량 화장품”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내용 수량이 6 이하이면서 포장을 열지 않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내용수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서 내용량을 표시할 경우에는 10개의 내용량 평균값이 표시된 내용량의 마이너스 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표시된 내용량과 실질 내용량이 부족한 경우의 오차는 마이너스 9% 이내로 한다.

**사용기한**

제6조

규약 제4조 제6호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화장품”이란 의약품 의료기기법 제61조 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화장품으로 한다. 단, 제조 또는 수입 후 적절한 보존조건 하에서 3년 이상 성상 및 품질이 안정된 화장품은 제외한다.

2

규약 제4조 제6호에 규정하는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등의 문자를 표시하며, 전항에 규정하는 화장품의 성상 및 품질의 안정을 보증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 월 단위까지 표시한다.

예

사용기한 2024년 4월

사용기한 2024.4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성분**

제7조

규약 제4조 제7호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이란 의약품 의료기기법 제61조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이하, “지정성분"이라고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단, 해당 성분에 부수하는 성분으로서, 상품 중의 배합량으로는 효능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성분(캐리오버) 등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성분을 배합량이 많은 순서로 표시한다. 단, 배합량이 1% 이하인 성분은 말미에 배합량이 많은 순서에 관계없이 표시할 수 있다.
2. 착색제를 제외한 지정성분을 전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표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착색제를 표시한다(이 경우, 배합량이 많은 순서와 무관하계 표시할 수 있다).

**원산국명**

제8조

규약 제4조 제8호에 규정하는 “원산국명“이란 해당 화장품을 제조한 사업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명칭으로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제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1. 화장품에 라벨을 붙이는 등 표시를 하는 것
2. 화장품에 외부 장식을 하는 것
3. 화장품을 단순히 포장하거나 조합하는 것

3

“원산국명“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수입품
   1. 가. “원산국○○”, “원산지○○”, “제조○○” 또는 “○○제”(“○○”는 원산국명 또는 지명)
   2. 나. “MADE IN ○○”, “Made in ○○” 또는 “made in ○○”(“○○”는 영문 표시에 의한 국가명 또는 지명)
2. 국산품
   1. 가. 국산품으로서 원산국을 잘못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외국의 국가명, 지명, 국기, 문장 등 이들과 유사한 것의 표시
      2. (나) 외국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명칭 또는 상표 표시
      3. (다) 문자에 의한 표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외국문자로 된 표시
   2. 나. 상기 “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국산“, “일본제” 또는 “Made in Japan“이라고 표시한다. 단, 상기 가(다)에 해당하는 표시로서 “Made in Japan“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다른 표시와 분리하는 등 눈에 띄게 표시할 것

4

소분류 공정만이 국내에서 행해진 화장품은 외국산품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다음의 예에 따라 표시한다.

예

원산국 ○○

제조판매원 ○○ 주식회사 주소

**사용상 또는 보관상의 주의**

제9조

규약 제4조 제9호에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별표 2의 좌측란에 열거하는 화장품으로 하며, 각각 동표 우측란에 열거하는 예시에 준하여 사용상 또는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문의처**

제10조

규약 제4조 제10호에 규정하는 “문의처”에는 화장품에 표시된 사항에 대해, 일반소비자로부터 문의가 있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연락처를 표시한다.

**문자의 크기**

제11조

규약 제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류별 명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명“ 및 제8호에 규정하는 “원산국명“에 사용하는 문자의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Z8305(1962)(이하, 이 시행규칙에서 같다)에 규정하는 7 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단, 표시면적 등에 의해, 7 포인트 이상의 문자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4.5포인트 이상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공정거래협의회가](https://www.cftc.jp/kiyaku/kiyaku03.html) 별도로 정하는 소형용기에 대해서는, 문자의 크기를 규정하지 않는다.

**표시 생략**

제12조

규약 제4조 단서에 규정하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각각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표시 면적이 좁은 화장품
   1. 가. 2밀리리터 이하의 직접 용기 혹은 직접 포장 또는 2밀리리터 초과 10밀리리터 이하인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직접 용기로, 그 기재사항이 그 용기에 직접 인쇄된 것에 수납된 화장품으로서, 표시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규약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명료하게 표시할 수 없고, 다음 표 좌측란의 사항이 외부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좌측란의 사항에 대해서 특례로서 해당 용기에 우측란과 같이 생략할 수 있다.

|  |  |
| --- | --- |
|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약칭 또는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제조판매업자의 상표 |
|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 생략가능 |
| 사용기한 | 생략가능 |

* 1. 나. 표시면적이 현저하게 좁고, 상기 “가”의 특례에 의해서도 명료하게 표시할 수 없는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 수납된 화장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외부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상기 “가” 표 좌측란의 사항이 표시된 경우에는 상기 “가”의 특례에 의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규약 제4조 제7호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성분”

지정성분이 다음 중 하나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에는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1. 가. 외부용기 또는 외부포장
  2. 나.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붙인 태그 또는 디스플레이 카드
  3. 다. 내용량이 50그램 또는 50밀리리터 이하인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 수납된 화장품 및 상기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것 중 어느 것도 갖지 않는 소용기의 견본품은 여기에 첨부하는 문서
  4. 라. 외부 용기 또는 외부 포장을 갖는 화장품 중 내용량이 10그램 또는 10밀리리터 이하인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 들어간 화장품은 여기에 첨부하는 문서 및 디스플레이 카드

1. 규약 제4조 제8호에 규정하는 “원산국명“

외부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원산국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 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규약 제4조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상 또는 보관상의 주의”

화장품에 첨부된 사용설명서 등에 “사용상 또는 보관상의 주의”가 표시된 경우에는 용기 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규약 제4조 제10호에 규정하는 “문의처”

화장품에 첨부된 사용설명서 등에 “문의처”가 표시된 경우에는 용기 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화장품의 효능효과**

제13조

규약 제5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의료기기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란 별표3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배합성분의 특기표시**

제14조

규약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기”란 배합성분 중 특히 호소하고자 하는 성분만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약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일반명칭“이 규약 제4조 제7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표시하는 지정성분의 명칭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한 배합성분이라고 일반소비자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성분의 명칭을 병기한다.

3

규약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배합성분”이란 다음을 말한다.

1. 배합성분의 명칭이 “약“ 문자를 포함하는 것 및 “한방성분 추출물” 등 의약품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
2. 배합성분을 특기하여 표시함으로써, 표시된 배합목적을 초과한 효능효과가 있다고 일반소비자에게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것

**배합성분의 명칭을 판매명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제15조

규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배합성분의 명칭을 판매 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한다.

1. 향수, 오드콜로뉴 등 향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에 향료명을 사용하는 경우
2. 립스틱, 손톱 화장품 등의 색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에 색조명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향료를 배합성분으로 하는 것에 해당 향료명을 사용하는 경우. 단, 해당 향료를 배합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해당 화장품의 판매명을 표시한 부분에 병기해야 한다.

예

레몬 향료 배합

1. 배합성분의 배합량이 다음 기준에 도달하는 것에 해당 배합성분명을 사용하는 경우
   1. 가. 올리브유가 90 퍼센트 이상 또는 동백유가 95 퍼센트 이상 배합된 화장품에 대해서, “올리브유“ 또는 “동백유” 문구를 판매명에 사용할 경우
   2. 나. 올리브유, 동백유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합된 화장품으로서, “올리브유액” “동백향유” 등의 명칭을 판매명에 이용할 경우
      1. (가) 유액, 크림 등과 같이 유화된 화장품의 경우, 해당 배합성분이 해당 화장품의 전체성분 중 수분을 제외한 성분의 5% 이상을 배합한 것
      2. (나) 향유 등과 같이 오일 화장품인 경우, 당해 배합 성분을 10% 이상 배합한 것
2. 배합성분의 명칭을 판매명에 사용해도 해당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게 잘못 인식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공정거래협의회가 인정한 것](https://www.cftc.jp/kiyaku/kiyaku03.html)

**특정용어의 사용기준**

제15조의 2

규약 제8조에 규정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화장품의 효능효과 또는 안전성에 관한 표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성을 의미하는 용어

"안전", "안심" 등 안전성을 의미하는 용어는 단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완전을 의미하는 용어

"완전", "완전", "절대" 등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용어는 단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만능을 의미하는 용어

"만능", "만전", "무엇이든" 등 효과가 만능 완전함을 의미하는 용어는 단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최상급을 의미하는 용어

"최대", "최고", "최소", "무유" 등 최상급을 의미하는 용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수치 또는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다.

1. 우위성을 의미하는 용어

“세계 제일”, “제1위”, “당사만”, “일본최초”, “발군”, “획기적”, “이상적“ 등 우위성을 의미하는 용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수치 또는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다.

1. 신제품을 의미하는 용어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신제품”, “신발매“ 등을 의미하는 용어는 발매 후 12개월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용어의 사용 기준은 별표 4-1 및 4-2에 정한 바에 따른다.

**비교표시**

제16조

규약 제9조에 규정하는 “비교표시”란 타사 또는 자사의 화장품을 비교대상 상품으로서 나타내고, 이러한 내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해 비교하는 표시를 말하며, 비교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었을 것
2. 입증된 수치나 사실을 정확하고 적정하게 인용했을 것
3. 비교 방법이 공정할 것

2

비교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통상의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것
2. 비교시에 시판되고 있으며, 통상의 방법에 의해 구입할 수 있을 것. 단, 직전까지 판매되었던 자사 상품과 비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교표시에 관한 조사 및 심의**

제17조

공정거래협의회는 회원 등으로부터 요구가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비교표시에 관한 조사 및 심의를 행한다.

2

비교표시를 실시한 사업자는 공정거래협의회로부터 관계자료의 제출이 요구된 경우, 신속하게 관계자료를 공정거래협의회에 제출한다.

**일반소비자가 사업자 표시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표시**

제18조

규약 제10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공급하는 화장품의 거래에 대해 행하는 표시로서, 일반소비자가 해당 표시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공급하는 화장품 거래에 대해서 행하는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임을 명료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일반소비자가 해당 표시인 것을 판별하기 어려운 표시를 말한다.

**세칙(자세한 규칙) 제정**

제19조

공정거래협의회는 규약 및 이 시행규칙을 실시하기 위해 세칙 또는 운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세칙 또는 운용기준을 정하여,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소비자청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197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규약 부칙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은 규약 시행일로부터 대략 1년간으로 한다.

[부칙] (1974년 11월 22일 승인, 공취지(公取指) 제860호)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단, 원산국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은 승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년 11월 1일 승인, 공취지(公取指) 제801호)

이 시행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의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년 2월 10일 승인, 공취지 제8호)

이 규칙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년 9월 7일 승인, 공취지(公取指) 제77호)

1. 이 규칙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의 실시 전에 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0년 8월 15일 승인, 공취지(公取指) 제87호)

1. 이 규칙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의 실시 전에 실시한 광고에서 제출한 추첨방식 등에 의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6년 10월 28일 승인, 공취지(公取指) 제41호)

1. 이 시행규칙의 변경은 규약변경의 인정고시일(199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사업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9년 12월 28일 승인, 공취지(公取指) 제171호)

이 시행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단, 변경 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 상품에 대해서는 이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1년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년 3월 12일 승인, 공취소(公取消) 제22호)

이 시행규칙의 변경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변경 전 규정에 의해 표시한 상품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30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년 8월 20일 승인, 공취소(公取消) 제135호)

이 시행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단, 변경 전 규정에 의해 표시를 한 상품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년 7월 14일 승인, 공취소(公取消) 제97호)

1. 이 시행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규칙의 실시 전에 사업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3년 3월 14일 승인, 공취소(公取消) 제27호)

1. 이 시행규칙의 변경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규칙의 변경시행 전에 사업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2007년 3월 3일까지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5년 8월 25일 승인, 공취소(公取消) 제183호)

이 시행규칙의 변경은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2009년 법률 제4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년 5월 24일 승인, 공취취(公取取) 제33호 소표대(消表対) 제190호)

이 시행규칙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청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년 7월 21일 승인, 공취취(公取取) 제572호 소표대(消表対) 제966호)

이 시행규칙의 변경은 규약의 변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청 장관의 인정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2월 16일 승인, 공취취(公取取) 제115호 소표대(消表対) 제114호)

이 시행규칙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청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2월 3일 승인, 공취취(公取取) 제59호 소표대(消表対) 제159호)

이 시행규칙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청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년 4월 7일 승인, 공취취(公取取) 제36호 소표대(消表対) 제417호)

이 시행규칙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청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 및 별표4-2의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년 3월 21일 승인, 공취취(公取取) 제34호 소표대(消表対) 제275호)

이 시행규칙의 변경은 규약의 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청 장관의 인정고시일(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